

의안번호	제726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자	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2일

#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이종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6
----------	-----

발의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발 의 자 : 이종갑,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유재목, 이의영, 임병운

###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 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안 제6조)
-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등 (안 제7조)
-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조례안예고 : 2024년 10월 일
- 협의 : 농정국 농업정책과
- 비용추계 : 붙임

##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이하 “농촌 서비스 공동체등”이라 한다) 현황, 지역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주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조직화 지원
2. 농촌 서비스 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3.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지역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그 밖에 농촌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회적 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2. 사회적 농장 시설 및 경영 개선 지원
3. 사회적 농장과 농업경영체 또는 지역 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계·협력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① 도지사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 및 단체의 농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농촌 서비스 공동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과제 발굴
2.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사업 추진 및 개선방향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란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한다.
  - 가. 일자리·소득 관련 서비스
  -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고용·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환경·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3. “농촌 서비스 공동체”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제9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장을 말한다.
6. “농촌 재능나눔활동”이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 해결에 기여함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지식·경험·기술 등 재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 계획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시·도 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2. 비용 발생 요인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비 등(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비 등)

## 3. 관련조문

- 안 제6조(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 안 제7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등)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것으로 예상

### 나. 추계 결과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농촌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
  - (기존) 농촌 서비스 공동체 지원 : 66,000천원 × 5개소 × 5년 = 1,650,000천원
  - (기존) 사회적 농장 지원 : 55,000천원 × 8개소 × 5년 = 2,200,00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770,000	770,000	770,000	770,000	770,000	3,850,000
농촌 서비스 공동체 지원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사회적 농장 지원	440,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2,200,000
재원 조달	770,000	770,000	770,000	770,000	770,000	3,850,000
국비	539,000	539,000	539,000	539,000	539,000	2,695,000
도비	69,300	69,300	69,300	69,300	69,300	346,500
시군비	161,700	161,700	161,700	161,700	161,700	808,500

6. 작성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강찬식